

의안번호	2220511
의 퇴 인	박수영 의원
회 답 일	2026.9.28.
추 계 번호	26E39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의 연간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2,763억원, 2037년 1조 7,596억원 등 10년간 총 12조 7,144억원(연평균 1조 2,7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감면기한 고려 시 2038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하나, 동 추계서는 향후 10년간의 효과를 제시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상향 (안 제30조)	-2,763	-5,786	-8,965	-11,909	-15,032	-15,51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16,009	-16,522	-17,050	-17,596	-127,144	-12,714

주: 향후 10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감면 한도 상향 - (감면 한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에 대해 연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적용기한) 2026.12.31. → 2036.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징수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8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취업활동통계등록부’¹⁾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
 - (비수도권 취업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연간 감면 한도 100만원 확대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계
 - － 전체 감면 대상자 중 비수도권 취업자가 43.6%라는 가정 하에 추계²⁾
 - － 감면한도 상향은 청년(감면율 90%)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년의 산출세액 구간별 1인당 평균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추가 감면액을 계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2024년 귀속소득 기준 감면액 및 앞서 추계한 제도 변경 효과를 합산한 금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후 연도별로 배분
 - － 명세서상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은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금액이므로, 이를 감면기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규 취업자에 대한 효과로 배분

1) 「취업활동통계등록부」는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 등에서 포착된 개인 일자리에 대한 전수자료로서 인구 관련 항목(성별·거주지 등), 고용 관련 항목(종사상 지위·근무일수 등), 기업 관련 항목(기업규모·행정구역·산업분류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2024년 ‘취업활동통계등록부’상 감면대상 업종(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제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 취업자(근속기간 1년 미만) 수 비중은 사업장 행정구역 소재지를 기준으로 비수도권 43.6%(수도권 56.4%) 수준임

예: 청년 (5년간 감면)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27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28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29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3년차
2030년 취업자				1년차	2년차
2031년 취업자					1년차

- 연단위 환산액은 2024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³⁾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 동 추계에서 활용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는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실제 발생한 금액 등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중소기업⁴⁾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 (감면 대상) 청년·60세 이상인 자·장애인 등·경력단절자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6. 12. 31.
- 동 감면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 (2012년 취업자부터 적용)된 후, 점차적으로 확대

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7. 9월 발간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표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감면 대상		취업 후 감면 기간	감면율	연간 감면 한도
	대상	청년의 범위			
'11.12.31.	청년	15세~29세	3년	100%	없음
'14.1.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50%	없음
'15.12.15.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6.12.20.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29세	3년	70%	150만원
'18.5.29.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150만원
'22.12.31.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25.3.14.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근로자	15세~34세	3년 (청년: 5년)	70% (청년: 90%)	200만원

주: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실적) 2022년 9,667억원에서 2026년 1조 2,297억원(잠정치)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p
감면액	9,667	9,609	11,384	11,608	12,297

주: p는 잠정치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추계 방법

□ (비수도권 청년취업자 감면한도 확대) 전체 감면대상 중 43.6%가 비수도권 사업장에 취업한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자료의 산출세액 구간별 1인당 평균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청년의 감면 한도 상향(200만원 → 300만원)에 따른 추가 감면액을 추계

[표 4] 비수도권 취업자(청년),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산출세액 구간별 ¹⁾	인원 ²⁾ (비수도권)	1인당			전체 소득세 추가 감면액 ³⁾
		평균세액	감면 산출액	추가 감면액	
	(명)	(만원)	(만원)	(만원)	(억원)
	A	B	C = B×감면율	300만원으로 한도 확대 시	D×A
감면율 90% 적용 대상자(청년)					
222.2만원 이하	329,926	103	92.8	0.0	0.0
333.3만원 이하	60,828	266	239.0	39.0	236.9
444.4만원 이하	19,030	379	341.5	100.0	190.3
555.6만원 이하	7,177	492	442.5	100.0	71.8
555.6만원 초과	7,823	1,021	918.5	100.0	78.2
계	424,784				577.2

주: 1) 각 산출세액 구간은 감면 한도(200/300/400/500만원)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하는 임계치를 역산하여 구분

2) 청년 신고인원에 비수도권 취업자 비율(43.6%)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

3) 과거 취업자에 대한 누적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분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감면액 등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제도변경의 효과를 연단위로 환산 후 배분하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향후 연단위 환산액이 증가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 적용기한 10년 연장에 따른 효과

－ 감면율 70%대상(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이 신고한 전체 감면액은 2024년 귀속기준 1,013억원이며, 해당 금액을 감면기간(3년)으로 나눈 연단위 환산액은 338억원 수준

－ 감면율 90%대상(청년)이 신고한 전체 감면액은 2024년 귀속기준 9,926억원이며, 해당 금액을 감면기간(5년)으로 나눈 연단위 환산액은 1,985억원 수준

○ 추가로 앞서 계산한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상향’의 효과(577억원)도 감면기간(5년)으로 나눈 연단위 금액(2024년 귀속기준 115억원)으로 환산한 후,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배분

[표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발생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	2038	2039	2040	2041	
2027년 취업자					...					
2028년 취업자										
...	...					...				
2035년 취업자										
2036년 취업자										

청년	감면액 발생 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8	2039	2040	2041	
2027년 취업자					...					
2028년 취업자										
...	...					...				
2035년 취업자										
2036년 취업자										

(3) 추계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의 연간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8년 2,763억원, 2037년 1조 7,596억원 등 10년간 총 12조 7,144억원(연평균 1조 2,7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감면기한 고려 시 2038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하나, 동 추계서는 향후 10년간의 효과를 제시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비수도권 청년 감면 한도 상향 (안 제30조)	-2,763	-5,786	-8,965	-11,909	-15,032	-15,513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16,009	-16,522	-17,050	-17,596	-127,144	-12,714

주: 향후 10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